

第16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4.2.27.)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64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회식	221
II. 제1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23
III. 부 록	
1. 의사일정안	229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2월 27일 (금요일) 14시 07분

開會式順(第164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14시 07분 개식)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 의사담당 김영구

(14시 09분 폐식)

지금부터 제1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4년 2월 27일 (금요일) 14시 09분

議事日程 (제1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6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6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

(14시 09분 개의)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이상일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
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김장한

의사과장 김장한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2월 18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규강,
김남훈,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교육위
원으로부터 지난 제159회 충청북도교육위
원회 임시회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했던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
처리를 위하여 교육위원회 집회요구가 있
어 2004년 2월 19일 공고 제2004-3호로

[제164회-제1차 본회의]

제1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제163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신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은 같은날 집행청에 이송하였으며, 집행청에서 2004년 2월 14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2004년 2월 20일 제22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이상일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6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4시 12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7일 1일간으로 하여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2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

(14시 13분)

● 의장 이상일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 23분 비공개회의종료)

● 의장 이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2항 진옥경교육위원징계의건은 찬성 5표, 반대 없고, 공개회의에서 경고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결과에 따라 경고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문, 진옥경 교육위원님! 귀 위원
 은 2003년 10월 22일 접수된 충청북도학
 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 제정 청원 소개
 위원으로서 지난 2003년 11월 8일 제158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 교육위원
 들이 동 청원조례 내용을 2주 이상 면밀
 히 분석·검토한 후 동 청원조례안이 현
 행 법령 등 저촉되는 부분이 있었고, 동
 청원조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조항들
 이 대부분이므로 조례제정의 실효성과 합
 법성이 결여되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
 심사소위원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
 라 표결에 의거 청원을 채택하지 아니하
 기로 의결한 데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 결정은 매우 무성의한 것이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또한 “저는 여기
 에 승복할 수 없고 온 도민들과 함께 교
 육위원의 역할에 대하여 성토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을 드린다.”고 발언한
 것은 급식조례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교
 육위원회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이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준용되
 는 지방자치법 제75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료 교육위원을 모욕하는 발언이
 며, 또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교육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대내외적으로 스스로 손상시킨 행

위로써 지난 2003년 11월 21일 제1차 징
 계·자격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시 진옥경
 교육위원이 동료위원으로서 초선위원이고
 좀더 자성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일정기
 간 보류하여 왔으나 3개월이 지난 오
 늘날까지 자성의 빛이 보이지 않아 부득
 이 잘못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내부질서
 를 확립하고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80조제1
 항에 의하여 공개회의에서 경고하니 앞으
 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례가 재발되
 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 2월 27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료위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불가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하여 비통한 마음을 밝히면서,
 이번 징계를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위원
 모두는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고, 교육위
 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 갈 것을 다짐
 하면서, 더 이상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를
 열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
 기수 위원님과 고규강 위원님께서 수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4회-제1차 본회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및 제1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폐회)

0 출석위원 : 5명

의장 이상일, 부의장 고규강,
위원 김남훈, 송대현, 이기수.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제164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4. 3. .

의 장 이 상 일 이 상 일

위 원 이 기 수

위 원 고 규 강

의사국장 이 상 기 이 상 기

